

편집위원회 규정

1. 본회 정관 제 4 조의 사업 중 한국부식학회지의 편집을 심의키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을 둔다.
2. 위원회는 편집규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위원장	1명
편집위원	약간명
4. 위원장은 회원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5.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6.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2매년마다 그의 반수를 교체한다. 임기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7.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편집 규정

1. 본회 간행물의 편집업무는 본 규정에 의한다.
2.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한국부식학회지(이하 회지라 약칭함)에 실리는 원고의 내용은 커다랗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한다.
 - (1) 연구논문 : 부식 및 방식에 관한 새로운 이론의 전개 및 새로운 실험상의 발견과 이의 해석등이 강조된 내용
 - (2) 총설 : 부식 및 방식의 한 분야에 대하여 문헌상에 나타난 이론 및 실험사실등을 종합평가 소개하고 기존 자료 및 해석에 대한 비평과 앞으로의 전망등이 강조된 내용.
 - (3) 단신 : 연구논문에 준하는 것으로서 실험상의 새로운 발견이나 이미 발표된 논문에 추가할 정보등을 간결하나 명백하게 다룬 내용.
 - (4) 산학협동 : 중요한 현장문제에 대한 기술보고 또는 해설, 외국문헌의 번역, 기술강좌, 새로운기술의 소개, 기타 부식 및 방식에 관한 자료의 소개 등.
 - (5) 학회소식 및 안내 : 학회행사, 각종 회의내용, 부식연구소 소개, 현장소개, 문헌 소개, 제품소개, 회원소식, 기타 부식 및 방식에 관한 자료의 소개 등
 - (6) 통신란 : 회지에 실릴 위의 모든 내용에 대해 이의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서신으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통신란에 수록할 수 있다.
4. 심사에 의해 채택된 논문은 최단 시일내에 투고 일자 순으로 발간되어야 한다.
5. 본회 주최 강연의 요지 및 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초록을 게재한다.
6. 표지의 색은 매년 바꾼다.
7. 매년 말호에는 해당년도 회원명단을 게재하고, 본회 입회원서를 삽입한다.
8.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연구논문 심사규정

1. 이 규정은 부식학회지에 게재하고자하는 연구논문에 적용한다.
2.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편집위원 또는 외부인사에게 심사를 위촉하며 심사위원 및

- 저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다.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3.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을 별도로 규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회에 그 채택여부를 명시한 심사의견서를 15일 이내에 편집이사에게 돌려 보내야 한다.
 4.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판정한다.
 - 가. 무수정으로 게재가 타당함.
 - 나. 약간의 수정을 전제로 게재가 타당함.
 - 다. 대폭 수정후 재심을 요한다.
 - 라. 게재가 부당하다.
 5. 논문은 심사위원회의 판정이 가와 나의 경우에만 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판정이 4항의 '라'인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이 따라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다른 심사위원에게 위촉하여 두 심사의견이 다른 때에는 편집위원에서 최종판정을 내린다. 심사의견이 4항의 '다'인 경우에는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장이 확인, 채택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과 저자간의 의견교환을 중개할 수 있다.
 6. 이 규정은 1981.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간행물 배포 세칙

(1978. 12. 8일 개정)

1. 본회 규칙 제29조에 따라 본회 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약칭함)의 배포업무는 본 규정에 따른다.
2. 간행물은 부식학회지(이하 회지라약칭함)와 기타 비정기 간행물(이하 비정기물이라 약칭함)로 나눈다.
3. 회지의 배포범위와 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명예회원, 고문, 단체회원, 정회원, 학생회원 ~ 1부씩
 - 특별회원 : 10부씩
 - 중 정 : 1~5부씩

한국 부식학회상에 관한 시행세칙

- 제 1 조 본회 규칙 제30조 2항에 의하여 한국부식학회상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 공로상
 2. 학술상
 3. 진보상
- 제 2 조 공로상은 부식학계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자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 제 3 조 학술상은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부식기술에 현저한 업적을 이룬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 제 4 조 진보상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학술진보상 : 본회 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자 또는 단체
 2. 기술진보상 : 부식기술 발전에 이바지한자 또는 단체
- 제 5 조 수상자는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 제 6 조 수상자의 선정은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 제 7 조 수상은 총회에서 행한다.